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4. 6 선고 2021가합521401 판결 [양수금 및 보증채무금 중 일부금]

전 문

원고A 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

담당변호사 양민수

피고1. 주식회사 B

2. C

변론 종결2023. 3. 14.

판결 선고2023. 4. 6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,

가. 234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0. 18.부터 2022. 7. 19.까지는 연 6.63%의, 그 다음
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,

나. 6,447,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0. 18.부터 2022. 7. 19.까지는 연 7.89%의, 그 다음
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되, 피고 C은 8,640,000원의 한도
내에서 지급하고,

다. 9,842,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0. 18.부터 2022. 7. 19.까지는 연 6.88%의, 그 다음
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되, 피고 C은 10,800,000원의 한도
내에서 지급하고,

라. 28,129,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0. 18.부터 2022. 7. 19.까지는 연 7.36%의, 그 다음
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되, 피고 C은 36,000,000원의 한도

내에서 지급하라.

2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, 234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0. 17.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.63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, 6,447,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0. 17.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7.89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되, 피고 C은 8,64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, 9,842,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0. 17.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.88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되, 피고 C은 10,8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, 28,129,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0. 17.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7.36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되, 피고 C은 36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중소기업은행과 피고들의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계약 체결 등

소외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B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과 아래와 같이 5개의 대출약정(이하 '이 사건 각 대출약정'이라 한다)을 각 체결하였고,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반환채무를 아래와 같은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.

1 2013. 10. 18.	중소기업 자금대출	100,000,000	2014. 10. 18.	11%	48,000,000
2 2014. 10. 24.	234,000,000	2015. 10. 24.	6.63%	한도 없음	
3 2015. 4. 17.	36,000,000	2016. 4. 13.	7.89%	8,640,000	
4 2015. 9. 25.	200,000,000	2016. 9. 23.	6.88%	10,800,000	
5 2016. 4. 22.	200,000,000	2017. 4. 19.	7.36%	36,000,000	

나. 중소기업은행과 피고 회사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등

중소기업은행은 피고 회사와, 피고 회사가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¹⁾에 관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다(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근저당권을 '이 사건 각 근저당권'이라 한다).

1	2005. 2. 4.	412,000,000	2005. 2. 4. 제10200호
2	2005. 5. 2.	88,000,000	2005. 5. 2. 제36493호
3	2006. 11. 3.	200,000,000	2006.11. 3. 제73074호

다. 원고와 중소기업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양수도계약 체결 등

원고는 2018. 11. 15.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및 연대보증채권을 포함한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전부 양수하였고, 중소기업은행은 2018. 11. 16.경, 2018. 11. 21.경 피고 회사에게 위 채권양수도 사실을 통지하였다.

라.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실행 등

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,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(위 법원 D, 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절차를 '이

사건 경매절차'라 한다),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9. 10. 17.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승계인 지위에서 배당액 700,000,000원 및 집행비용 등을 포함하여 합계 706,474,368원을 지급받았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, 4,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들 주장 요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권 및 보증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,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양수한 채권 중 일부의 만족을 얻었으므로, 피고들에 대하여 변제충당 후 남은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연대지급을 청구하되, 피고 C에 대하여는 보증한도 내에서의 지급을 구한다.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1) 양수금 지급의무의 발생 중소기업은행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금원을 대출하여 주고,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,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서 정한 만기가 모두 도래한 사실,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, 중소기업은행이 위 채권양수도 사실을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에게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

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연대하여,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권 및 보증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,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변제충당 앞서 본 사실, 갑 제4,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9. 10. 17. 기준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양수한 피고들에 대한 채권의 잔여 원리금 및 각 채권의 연체이자율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,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의 합계액이 8,338,000원인 사실,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706,474,368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[한편, 피고들은 원고

내부에서 정리한 '채권원리금계산서(갑 제2호증)'만으로는 채권잔액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은행이 보낸 채권양도통지서(갑 제4호증)에 첨부된 2018. 8. 31.자 기준 각 채권원리금 잔액 및 원고의 회수전표(갑 제9호증)상 2019. 10. 17.기준 각 채권원리금 잔액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상기 증거들을 종합하면, 2019. 10. 17. 기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의 잔여원리금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].

1	2013. 10. 18.	중소기업자금대출	28,746,739	3,448,031	11.00%	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권
2	2014. 10. 24.	234,000,000	19,322,413	6.63%		
3	2015. 4. 17.	6,447,175	534,978	7.89%		
4	2015. 9. 25.	9,842,055	714,392	6.88%		
5	2016. 4. 22.	28,129,148	2,183,301	7.36%		
6	2018. 1. 30.	기업구매자금대출	20,278,743	1,607,799	7.54%	
7	2018. 1. 30.	4,397,667	348,668	7.54%		
8	2018. 1. 30.	4,562,800	361,761	7.54%		
9	2018. 2. 28.	1,925,068	153,025	7.56%		
10	2018. 2. 28.	10,829,501	860,849	7.56%		
11	2018. 4. 5.	8,448,217	984,970	9.31%		
12	2018. 4. 5.	13,382,962	1,560,309	9.31%		
13	2018. 4. 5.	149,801,421	17,465,243	9.31%		
14	2018. 4. 30.	24,052,160	2,776,772	9.18%		
15	2018. 4. 30.	125,087,908	14,441,148	9.18%		
16	2018. 4. 30.	26,451,733	3,053,797	9.18%		
17	2018. 4. 30.	60,000,000	6,926,878	9.18%		
18	2018. 5. 31.	140,000,000	15,742,243	9.14%		
19	2018. 5. 31.	28,506,744	3,274,786	9.14%		
20	2018. 5. 31.	19,422,304	2,231,188	9.14%		
21	2018. 8. 6.	신용카드대금채권	1,662,617	479,481	25.00%	
합계	945,974,962	98,472,032				

살피건대, 위 2019. 10. 17. 원고가 지급받은 706,474,368원을 민법 제477, 479조에 따라 ㉠ 비용, 이자, 원금 순으로, ㉡ 이자, 원금의 총당순서에 관하여는 변제이익이 더 많은 연체이자율이 높은 채무에 먼저 충당할 경우, ① 원고가 채권의 보전을 위해 사용한 비용 8,338,000원 및 ② 위 각 채무의 이자 합계 98,472,032원은 모두 소멸하고, ③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 중 위 표 순번 1번의 채무의 원금은 모두 소멸하며, ● 나머지 순번 2 내지 5번 채무의 원금은 그대로 남게 된다.

3) 소결론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,

가) 2014. 10. 24.자 대출약정에 따른 잔여 대출원금 234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19. 10. 18.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22. 7. 19.까지는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6.63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,

나) 2015. 4. 17.자 대출약정에 따른 잔여 대출원금 6,447,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0. 18.부터 2022. 7. 19.까지는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7.89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, 피고 C은 연대보증한도액인 8,64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,

다) 2015. 9. 25.자 대출약정에 따른 잔여 대출원금 9,842,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0. 18.부터 2022. 7. 19.까지는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6.88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, 피고 C은 연대보증한도액인 10,8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,

라) 2016. 4. 22.자 대출약정에 따른 잔여 대출원금 28,129,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0. 18.부터 2022. 7. 19.까지는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7.36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, 피고 C은 연대보증한도액인 36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[원고는 위 각 대출원금에 대하여 변제충당일인 2019. 10. 17.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, 지연손해금은 변제충당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. 다만 원고가 청구하는 원금이 모두 인용되는 점,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기각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이후 피고들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

없으므로,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가 기각되더라도, 위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].

나.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

1) 피고들은 원고가 청구하는 채권(채무)들은 이미 소외 신용보증기금에 의하여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.

을 제2, 3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소외 신용보증기금이 2015. 4. 14.경, 2016. 11. 23.경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,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가.의 2)항 기재 표 순번 3, 6 내지 10번 기재 대출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나 앞서 본 사실,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2018. 8. 31. 기준 위 각 대출채무의 원금과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금액, 변제충당일인 2019. 10. 17. 기준 원금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아래 각 금원의 액수를 비교하여 보면, 변제충당일 기준 각 대출채무의 원금액은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3	2015. 4. 17.	(계좌번호 1 생략)	31,000,000	24,800,000	6,447,175
6	2018. 1. 30.	(계좌번호 2 생략)	129,646,858	110,199,829	20,278,743
7	2018. 1. 30.	(계좌번호 3 생략)	28,115,340	23,898,039	4,397,667
8	2018. 1. 30.	(계좌번호 4 생략)	29,171,076	24,795,414	4,562,800
9	2018. 2. 28.	(계좌번호 5 생략)	12,443,312	10,576,815	1,925,068
10	2018. 2. 28.	(계좌번호 6 생략)	70,000,000	59,500,000	10,829,501

2) 또한 피고들은 (a)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은 대환대출에 해당하므로, 피고 C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거나 (b)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가 대환대출로서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고, 원고가 청구하는 채권(채무)은 대환대출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 C이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.3) 그러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 설령 대환대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이 이 사건

각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각 보증한도 내에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. 또한 이 사건 각 대출약정 이후에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대환대출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전혀 없다.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,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를 적용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김도균

판사최운영

판사김수현

별지

1)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포함

2) 위 6~7면 기재 표 순번기준

3) 이는 피고들이 2021. 8. 31.자 준비서면 2면 라.항에서 한 주장으로, 그 취지가 (a)인지 (b)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.